

2026년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 입주기업 공개모집

상주올래는 상주 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주시가 설립하고,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올래와 함께 성장하며 지역 창업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우수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청년 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

I. 모집 개요

- **입주대상:** 전국 19세 이상 45세 이하 2026. 7. 7.(화)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예비창업자

*2019. 7. 8. 이후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 창업자는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제한 없음
- 최종선정 기업은 입주개시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 입주공간으로 이전해야 함 ※단, 해외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입주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6p 지원제외대상 참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상주올래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입주기간:** 입주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기본입주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모집분야:** 일반창업/미디어/식음업 3개 분야 중 택 1

- 일반창업: 제조, 기술, 교육, 서비스 등 일반 창업 분야(입주제한업종 제외)
- 미디어 특화창업: e-커머스, IT, 콘텐츠, 미디어(1인 미디어 포함) 기반 벤처창업 분야
- 식음업 특화창업: 카페 등 식음 서비스 기반 창업 분야

-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 일반창업: 6개사
- 미디어: 2개사
- 식음업: 2개사

□ 시설개요 및 세부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m ² 당 이용료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레	경상북도 상주시 성하2길 30	총 10개사	없음(무료)
구 분	내 용		
업종별	일반창업+공용공간	미디어 특화창업 전용	식음업 특화창업 전용
지상 4층	옥상정원		
지상 3층	비즈니스 스테이션(독립형 지정석), 회의실 B·C(중형 회의실), 기업지원단		
지상 2층	청년스퀘어(공유 라운지), 피움·키움·이룸(1-2인 회의실), 회의실A(중형 회의실), 공유 키친		
지상 1층	세미나실(중대형 다목적실)	미디어제작실A·B (스튜디오 장비 제공)	카페 라운지(장비 제공)
지하 1층	입주기업 공용 창고		

□ 지원내용: 상주올레 입주기업 지원사항 적용

- 창업공간(사무공간 및 공용공간 등) 무료 제공
- 입주기업 맞춤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기업, 투자사, 금융사, 공공기관 협업사업 지원
- 기업별 수요 및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사업확장 및 시장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 지원 등
- 입주시기: 2026년 8월 중
 - 최종선정 이후 별도 입주상담을 통해 입주시설(공간) 및 시기 확정 후 계약체결
 - 이후 연장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최대 1년 이내 연장 가능, 상주시 정책변경 및 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입주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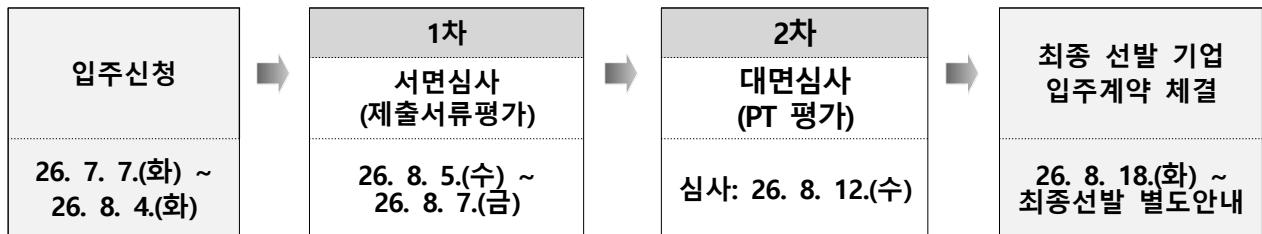
II. 신청 및 선정개요

□ 신청방법: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레 홈페이지 신청 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 ▶ 청년창업지원센터 웹페이지 접속(www.sangjuolleh.kr)
- ▶ 해당 모집공고 확인(대관/신청 → 지원사업 → '2026 입주기업 모집')
- ▶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등 첨부파일 송부
- ▶ 신청완료

□ 신청기한: 2026. 8. 4.(화) 18:00까지

□ 선발절차: 요건검토 → 1차 서면평가(1.5~2배수 선발) → 2차발표(PT)



※ 상기 일정은 모집진행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예비창업자	① 입주신청서(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첨부양식 작성
	③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최소 10p 최대 30p 이내 자유 양식)	3개월 내 창업계획 필수 포함
기 창업자 (사업자등록 완료)	① 입주신청서(양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사업계획서 또는 IR자료 (최소 10p 최대 30p 이내 자유 양식)	
	④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⑥ 직전연도 재무제표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⑦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⑧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평가기준 세부

<입주선정 1차 심사(서면)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입주기간 내 사업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 목표시장 및 고객 분석의 적절성	20
시장성	-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및 차별성 - 수익모델의 타당성 및 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화 전략 및 지속가능성	30
지역기여도 (공공성)	- 시설 운영 취지와 부합 - 상주시 지역자원 활용 계획 -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 상생 기여 가능성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0
성장 가능성	- 사업의 성장 잠재력 -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과 추진 의지 -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향후 확장 가능성	30
가점	- 신청마감일 기준('26.7/21), 상주시 거주 청년 또는 상주시 전입 예정자 - 지역특화산업(농식품, 스마트농업, 관광, 로컬콘텐츠 등) 연계 사업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 실적(최근 3년 이내) - 여성(여성기업확인서) -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수상증명서)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점, 최대 6점

<입주선정 2차 심사(PT) 평가기준>

구분	세부 항목	배점
창업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전문성·추진력 - 창업 의지 및 사업 수행 역량	20
사업성	- 제품·서비스의 경쟁력 및 차별성 - 수익모델의 구체성 및 시장 진출 가능성	30
성장 가능성	- 사업 확장성 및 성장 잠재력 - 사업화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20
지역 기여도	- 상주올래 입주 필요성 및 활용 계획 - 상주시 지역자원 활용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30

III. 유의사항 및 문의처

- 공고에서 정한 접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 금융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사업 참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문상 요건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강제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타 ‘입주형’ 창업 지원사업 중복 수혜, 사업 참여 의무 위반, 부당 폐업 등 부적정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강제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심사 결과 모집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정 모집규모에 미달 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이메일 : sangjuolleh@kmac.co.kr

- 전 화 :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주올래 기업지원단(054-500-8881~3)

<참고 :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순번	대상 업종	분류코드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 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 신청일 기준 현재 휴업중인 기업
- ▶ 전국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